

# 사업장 보건관리일지 작성요령

노동부산업안전과보건계장 이 경 남

## 1. 서 언

어떤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곧 과거를 미루어 앞날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국가는 물론이고, 회사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특히 사업장에 있어서 매일 매일의 활동을 요령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료들이 쌓여 회사의 업무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지 기록유지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관계자들이 기록·유지하여야 할 것이 보건관리일지이다. 이 일지는 사업장에서 일상 보건관리의 각종 기록, 자료, 통계등을 모두 기입정리, 편철하여 덩어리로서 항상 편리하게 사용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의 실태를 용이하게 파악하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건관리일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현재 제정중인 보건관계자 직무지침에 보건관리일지의 작성요령이 포함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보건관계자 직무지침에 있는 보건관리일지의 서식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 2. 보건관리일지 기록 및 편철요령

보건관리일지를 기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편철을 체계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보건관리일지에 꼭 필요한 비치서류를 편철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서식 1) (예시) 당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에 대한 조직의 체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0 조)를 도표식으로 작성 안전 보건관리실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안전 보건관리조직 관련법규(서식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와 보건담당자 그리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련되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기록하고 법령의 개정시에도 계속 정정 유지함으로써 법적 선입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일지 (별지서식 3) 및 안전 보건위원회 위원명부 (서식 4)

매분기 (매 3월마다) 마다 1회이상 개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매회의 개최시마다 제출된 안전과 심의사항, 회의결과 결정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며, 안전 보건위원회 위원의 명부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또는 서기의 성명과 직명 선임 또는 해임일자등을 기록하여 안전 보건관리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라. 안전 보건관계자 명부 (서식 5) 및 안전 보건관리 관계 자격증 소지자 명부 (서식 6)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중 기히 안전 보건관계자로 선임된 자는 안전 보건관계자 명부에 기록하고, 안전 보건관계자로 선임된 자와 현재 안전 보건관계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인력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건강관리, 산업위생)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명부를 기록 유지함으로써 안전 보건관리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마. 연도별 안전 보건관리계획 (별지서식 7) 및 월별 안전 보건관리실시 계획 (별지서식 8)

매년 년초에 사업장에서 각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립 확정된 안전 보건관리계획의 개요, 안전 보건강조기간 행사등의 사항을 빠짐없이 월별로 구분 기록하고 매월 실시실적을 기록 유지하며 상세한 내용은 월

별 보건관리실시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하여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한다.

바. 부상 질병으로 인한 결근상황표 (서식 9)

사업장에서 작업중 부상과 질병은 물론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결근자에 대하여도 서식에 의거 명단을 작성기록 유지함으로써 그날 그날 근로자들의 결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안전 보건관리 일지 (서식 12)의 부표로서 활용)

사. 월별 안전보건통계표 (서식 10)

안전보건통계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한 보건관리의 문제점이 어떤것인가를 알 수 있으며 보건관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서도 매우 귀중하다.

안전 보건통계는 여기에 기술한 이외에도 각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광범위하게 분석 작성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환경측정등의 실태조사 결과는 그라프용지에 자세한 내용을 작업장별로 기록 유지한다.

아. 유해부서 종사근로자 명부 (서식 11)

당해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명부를 유해부서 작업장별로 분리 기록하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자료로서 활용하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 관리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아. 취업제한 및 취업금지, 작업전환 근로자 명부 (서식 12)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보건관리자의 의견에 따라 취업제한, 취업금지, 작업전환 등의 사후조치를 필한자에 대하여 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차. 안전 보건관리일지 ( 서식 13 )

○ 안전 보건관리일지는 보건관계자의 직무상의 수행사항 곧 사업장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매일 근로자 총수, 출결근현황, 입·퇴사자 현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강관리 이상자에 있어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수진자, 사망, 완치등으로 구분 기록하고 부상 질병으로 인한 상황표를 기록 정리한다.

\* 부상, 질병으로 인한 결근 상황표 ( 서식 9 )

보건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성을 유지 증강시켜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업장에 있어서 보건관계자의 일상활동은 근로자들의 정확한 출·결근 상황의 명확한 기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결근상황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 보건관리일지 기타 특기사항란에는 관계관청과 소속장의 지시, 명령, 허가 또는 관계관청으로부터의 연락 사항과 감독관청, 소속장을 포함한 관계부서에의 보고, 신청, 연락사항, 관계행사, 보건교육실시상황 관계회의등을 기록하고 그외에 각종서류, 대장, 통계작성사항등을 기록 정리한다.

또한 보건관리일지는 이것을 단순한 기록으로서만 남길것이 아니라 월보, 반연보, 연보등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본다.

차. 기타서식

기타 작업환경측정기구현황 ( 서식 14 )  
보호구비치현황 ( 서식 15 ) 등을 비치함으로써 일상 보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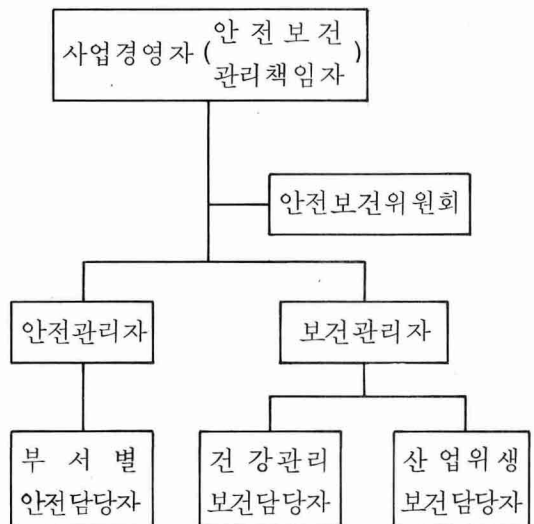
### 3 . 맺음말

이상에서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치서류와 서식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그러나 이상에 기술한 서류만 비치하여 기록 유지한다고 해서 보건관리업무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자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연구 노력하고 각종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보건관리 업무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보건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개선해나가며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서식 1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도 ( 예시 )



※ 해당조직에 선임된 자의 명단을 기록

( 서 식 2 )

사업장 안전 보건위원회 설립과  
관계규정 ( 발 책 )

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일자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12 조 (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 (1)사업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 이하 “ 관리책임자 ” 라 한다 ) 를 두어야 한다. (2)관리책임자는 제 13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이하 “ 관리자 ” 라 한다 ) 를 지휘 감독한다. (3)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호 내지 8 호 : 생략

제 13 조 ( 안전관리자 ) 생략

제 14 조 ( 보건관리자 ) 생략

제 15 조 ( 안전 보건총괄책임자 ) 생략

제 16 조 ( 안전 보건위원회 ) (1) 사업주는 제 12조제 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 조 ( 관리책임자의 선임 ) 생략

제 9 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 생략

제 10 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생략

제 11 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 생략

제 12 조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 생략

제 13 조 ( 보건관리자의 선임 ) 생략

제 14 조 ( 보건관리자의 자격 ) 생략

제 15 조 ( 보건관리자의 직무등 ) 생략

제 16 조 ( 보건담당자의 선임 ) 생략

제 17 조 ( 보건담당자의 자격등 ) 생략

제 18 조 ( 보건담당자의 직무 ) 생략

제 19 조 (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 생략

제 20 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등 )

(1)법 제 16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사업장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영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리책임자 1인
2. 안전관리자 1인
3. 보건관리자 1인
4.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회원.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대표 3인

(3)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한다. 다만, 제 1항 후단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4)산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

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서 식 3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일지

○개최일시 :	결	담당		사 장
○개최장소 :	재			
출석위원 성 명	⋮	불참위원 성 명		
회의안건				
심의안건				
회의결과				
의결사항 및 대책				

( 서 식 4 )

안전보건위원회 위원명부

구 분	성명	직명	선임년월일	해임년월일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간사 또는 서 기					

\* 비고란에는 선임된 경위를 기록 (노사협의회 위원, 보건관리자등)

( 서 식 5 )

안전 보건관계자 명부

성명	년령 (성별)	직명	담당 업무	전임 또는 임분 구분	선 임 일 자	해 임 일 자	비 고 ( 자격 증 급 및 수 )

( 서 식 6 )

안전보건관리 관계자격증 소지자 명부

성명	소속	년령	자격 명	자격 증 번호	취득 일자	고용 일자	퇴사 일자	비 고

( 서 식 7 )

년도 ( 분기 ) 안전보건관리 계획

월 별	계 획 사 항	실 시 사 항	비 고



( 서식 11 ) 유해부서 종사근로자 명부

성명	년령 (성별)	취업 일자	작업 부서	작업 내용	유해 요인	건강진단 및 기타

( 서식 12 ) 취업제한 및 취업금지  
작업전환 근로자 명부

성명	소속 (직명)	년령 (성별)	질병명	발령 일자	조직대책 및 기타

( 서식 13 )

보건관리일지

결 재	보 건 담 당 자			사 장

일 자	19 . . . ( 요일 )			기 록 자	건강관리보건담당자 (인) 산업위생보건담당자 (인)						
날 씨				기 온 및 습 도	10:00	0 %	16:00	0 %			
근 로 자	총 수	계 남 여		측정장소							
	질병및사고 (결근자)			질병 및 사고 부서별 내역							
	기 타										
상 병	구 분	구 환	신 환	완치, 신환, 부서별 내역 (상병부위 병명, 처치등)							
	건강이상자수	입원 통원	명 명						입원 통원	명 명	
	공 상 자	입원 통원	명 명						입원 통원	명 명	
	내 역	외 상		명		명	순 회 점 검	시 간	점 검 서	점 검 결과 이상유무	조치결과
		화 상		명		명					
		기 타		명		명					
일 반 병 자		명		명							
산 업 재 재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유해물보호구 보건후생시설	(이상유무 및 내용 상세히 기록)										
기타특기사항						건 강 상 담				명	

( 서식 14 )

작업환경측정기계기구 구비현황

일련 번호	측정기계 기구명	용도	형식	구비 수량	구입 일자	제 회 사 명 ( 제 조 일 자)	조 단 가

( 서식 15 )

보호구 비치현황

품명	규격	용도	소 요 량	비치량		비치 장소	관 리 책 임 자	제 조 판 매 원 ( 단 가)
				비치 량	예비 량			

◎ 産業保健뉴스 ◎



曹圭常會長,  
李昇漢理事  
國際學會參加

조규상 회장과 이승한 이사는 미국 핏스버그대학에서 6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광부(鑛夫)들의 건강(健康)에 관한 국제학회에 참석 탄폐증(炭肺症)의 진행과 광산재해(鑛山災害)에 관한 연계를 발표한다.

한편 조규상회장은 이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WHO 주최로 동대학에서 개최되는 “광부(鑛夫)들의 보건(保健)”에 관한 서적출판을 위한 모임에 참석후 6월하순 귀국예정인데 조희장은 이 서적에 있어 규폐증(珪肺症)과 탄폐증(炭肺症)의 집필을 담당하고 있다.

## 제 11차 아세아 산업보건학회개최안내

기히 알려드린 바와같이 제 11차 아세아 산업보건학회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마니라의 국제학회 회장에서 개최됩니다.

1. 학회에 연계 발표하실 분은 본협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하여 7월 1일까지 초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학회에 참석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6월 30일까지 본협회에 연락하여 주시면 소정신청양식을 알려드립니다.
3. 본 학회에서는 35세 미만자로서 1982~1985 사이에 발표된 우수 논문에 대하여 학술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희망자는 6월 25일까지 본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